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해설서

2022.04.

# 차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노동조합의 활동

1. 노동자 시민의 투쟁으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2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요 .....	4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	10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 .....	2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내용 .....	3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노동조합의 활동

## 1. 노동자 시민의 투쟁으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 행위’ 라는 사회적 확인

2006년부터 본격 전개된 15년간의 ‘기업 살인법 제정’ 운동으로 2021년 1월 법이 제정되었고,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2006년부터 시민사회와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고, 기업 살인법 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입법 투쟁으로 2012년 ‘산재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 을 입법 발의했고,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포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을 전개했습니다. 2016년에는 청원 법안을 발의하고, 2017년에는 노회찬 의원실과 입법 발의를 했지만 논의조차 없이 폐기되었습니다.

2020년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원년 투쟁’ 을 결의하고, 전태일 3법 제정운동을 펼치면서 피해자 유족, 시민사회와 함께 32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본부를 결성하여 1년여를 전국 곳곳에서 집중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노동자, 시민의 10만 동의청원, 피해자 유족을 중심으로 하는 국회 단식 농성과 전국 곳곳에서 전개된 농성, 캠페인, 동조단식으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 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현장 곳곳에서, 지역 곳곳에서 제정운동의 선두에 서 왔습니다. 노동자 시민이 스스로 법안을 만들고,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가 투쟁이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공무원 처벌 삭제 등 반쪽짜리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직업성 질병을 24개 급성 중독으로 한정하고,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등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의 기만적인 법 제정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자본의 끈질긴 저항과 공세에도, 정부와 보수 정치권의 입법 반대와 여론공세에도 국민의 72%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행위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확인된 지표입니다.

## 실질적인 현장 개선, 중대재해 근절은 민주노총의 강력한 투쟁만이 해답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사고사망 절반감소”를 내세웠지만, 형식적인 전시행정 사업으로 감소는커녕 산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대책이 현장에 밀착 되어 있지도 않고, 노동자의 참여 보장과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때마다 협소한 작업중지 명령, 사고조사와 감독의 노동자 참여 거부를 반복해 왔습니다. 법이 제정되고 올해 7월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 발족과 감독관 증원을 했지만, 노동부 감독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경총, 전경련, 건설협회 등 사업주 단체들은 법 개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별로 조직구조를 개편하고,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등 편법과 꼼수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과 ‘CEO 처벌 회피와 징벌적 손해배상 대응 전략’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법은 전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고가 다발하는 사업장만 준비하는 ‘찾잔 속의 태풍’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처벌은 되지 않는 ‘종이 호랑이’로 만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72%의 찬성으로 법이 제정된 이후 경제단체와 보수언론의 끈질긴 언론 공세가 진행 중이지만 2022년 1월에도 국민의 77.5%는 이 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사업주 처벌반대는 18.7%에 불과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중대 산업재해를 포함하여 원청, 본사의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을 수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에는 <인력과 예산 배치, 유해위험 요인 점검과 개선, 하청,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종사자 의견을 듣고 개선, 안전보건관계 법령 점검과 개선, 안전교육 실시 예산과 이행>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위험성 평가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건설업 원 하청 안전보건협의체 등과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된 것만으로 현장이 달라진 적은 없습니다. 민주노총의 강력한 투쟁만이 사업장의 실질적인 개선과 변화를 만들어 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살아 있는 법으로 작동하게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투쟁만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찾잔 속의 태풍이나 종이호랑이가 아니라 ‘살아 있는 법’으로 작동해서 노동자, 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고리를 끊는 전환점이 되게 할 것입니다.

김용균 투쟁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을 전후로 현장의 노동안전보건 활동과 중대재해 대응 투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재피해자 유족들도 투쟁에 나서고 있으며, 노동자의 생명안전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와 연대투쟁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동안전, 공공안전 사업의 후순위 배치’, ‘노동안전보건 간부의 부족’, ‘취약한 중대재해 대응 역량의 확대 재생산 구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중대재해 대응 구조와 지침의 부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노동안전 보건 투쟁은 기간의 활동을 넘어 질적인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매개로 단위 사업장 현장 활동과 투쟁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의 노동안전보건 투쟁을 한 단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아 결의해 나가야 합니다.

##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요

- 법안 명칭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민주노총은 법 제정 취지를 살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명칭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
-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1월 26일 공포.
- 2022년 1월 27일 시행.
- 정부지원 보고는 적용대상은 공포 후 즉시 시행
-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이상 건설공사(본사기준)는 2024년 1월 적용

###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구성

구분		내용
총칙	2조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중대산업재해</b>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무 제공자, 하청 사업주에게 발생한 재해 사망 1명 이상, 동일사고 6개월 이상 치료 2명 이상, 동일유해요인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li> <li>- <b>중대시민재해</b>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에게 발생한 재해 사망 1명 이상, 동일사고 2개월 이상 치료 10명 이상, 동일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질병 10명 이상</li> <li>- 종사자, 사업주, 경영책임자 정의</li> </ul>
	3조 적용범위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제외
2장 중대산업재해	4조 경영책임자 의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li> <li>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조치</li> <li>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명령의 이행조치</li> <li>④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li> </ol>
	5조 도급	- 도급, 용역, 위탁 시 원청 본사 경영책임자에게 4조의 의무 동일하게 부여
	6조 처벌	사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병과 부상과 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병과 5년 이내 재발 시 가중처벌
	7조 양벌규정	법인 사망 - 50억 이하 벌금. 부상과 질병- 10억 이하 벌금
	8조 안전교육	중대 산업재해 발생 경영책임자 교육 이수 의무 (처벌 여부 무관) - 20시간. 위반 시 과태료 5,000만원 이하
3장 중대시민	9조 경영책임자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물과 공중교통수단 및 이용시설 (소상공인, 교육시설 제외)구분</li> <li>- 화학물질, 자동차, 의료기기 등 제조물의 시민재해 적용</li> <li>-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이 적용대상</li> <li>- 경영책임자 의무는 중대산업재해와 동일. 점검만 추가</li> <li>- 공중교통수단, 이용시설은 원청 경영책임자 의무 부여</li> </ul>

재해	10조 처벌 11조 양벌규정	중대 산업재해와 동일
4장 보칙	13조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 형 확정 후 1년간 공표	
	14조 심리절차 특례	피해자, 법정 대리인 증인 신문 해당 분야 전문가 전문심리위원 지정 소송절차 참여
	15조 징벌적 손배	법인이 피해자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 책임
	16조 정부 지원	중대 재해 예방대책, 반기별 국회 보고
부칙	시행일	50인 미만, 50억 미만 공사 3년 유예 (2024.01 시행)

구분	법안 내용	분석 및 비고
명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약칭하고 있음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구분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2조 1호에 따른 산업재해	사고, 과로사, 질병, 자살 등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 해당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 유해요인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산안법은 사망만 처벌 - 부상과 질병도 일정한 조건에서 처벌 대상으로 명시
중대시민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사망 부상 - 동일사고 2개월 이상 치료 10명 이상 질병 - 동일원인 3개월 이상 치료 10명 이상	- 시민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처벌 법률 없었으나 도입 - 산업재해 대비 범위 좁음

공중이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재해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에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준하는 비영리 법인, 교육시설 제외</li> <li>- 실내 공기질 관련법 중 대통령령</li> <li>- 시설 안전법 대상 중 공동주택 제외</li> <li>- 다중이용업소 중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li> <li>- 생명신체상의 피해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 시민재해 적용제외 (건설, 광업, 운송은 10명 미만 사업장,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장)</li> <li>- 소상공인에 준하는 비영리 법인 제외</li> <li>- 2020년 교육안전법 제정으로 교육시설은 시민재해 적용에서 제외.</li> </ul>
공중교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철도 차량</li> <li>- 철도 중 동력차 객차(전용철도제외)</li> <li>-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사용되는 승합자동차</li> <li>- 해운법의 여객선</li> <li>- 항공사업법의 항공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특정 다수 이용자 범위로 한정.</li> </ul>
제조물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원료, 제조물로 인한 재해 포괄</li> <li>- 자동차등 일반 제조물에 의한 시민재해</li> </ul>
종사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대상으로 포함 (직종 제한 없음)</li> <li>- 다단계 하청 노동자 적용대상으로 포함</li> <li>- 하청 사업주 중대재해도 적용</li> <li>- 발주, 장비 등 임대차 계약은 형식적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 도급여부에 따라 적용</li> <li>- 현장실습생은 '대가'에 대한 실질관계에 따라 적용</li> </ul>
	나. 도급, 용역, 위탁등 계약의 형태 불문하고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 제공하는 자	
	다. 다단계 하도급으로 내려간 각 단계의 <u>가목</u> , <u>나목</u> 의 관계가 있는 자	

구분	법안 내용	분석 및 비교
경영책임자범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책임자 처벌도입</li> <li>- 안전담당이사 라도 인력과 예산에 대한 실질 권한 있어야 경영책임자</li> <li>- 산안법 14조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이행의무와 연동해석 필요</li> </ul>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의 장</li> <li>- 관련 법률관계에 따라 경영책임자 범위 달라질 수 있음</li> </ul>
중대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의무 적용제외. 정부지</li> </ul>

<p>산업재해</p>	<p>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들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원 등은 별도 규정으로 적용대상임 - 5인미만 사업장 산안법상으로 경영책임자 처벌은 가능. 양형의 문제 남음</p>
<p>중대산업재해경영책임자의무</p>	<p>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또는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li> <li>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li> <li>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li> <li>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li> </ol> <p>② 1호, 4호는 대통령령으로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의 대표.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사업, 사업장별로 하도록 의무 규정</li> <li>- 예산. 인력을 포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핵심. 9개의 세부사항 시행령 규정</li> <li>-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법령. 법령 이행조치는 법령점검과 안전교육 내용으로 4개 세부사항 시행령 규정</li> <li>- 발주자 공기단축 처벌은 제외됨. 건설안전특별법에서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사 처벌 가능. 건설산업연맹의 법 제정 투쟁 진행 중</li> </ul>
<p>중대시민재해경영책임자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li> <li>-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li> <li>-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하게 경영책임자의무 도입. 인력, 예산외에 &lt;점검&gt; 추가</li> <li>- 구체적 조치는 시행령 위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의무 도입</li> <li>- 제조물 책임법에 대비하여 원료의 판매, 유통까지 확대. 관리 책임으로 확대.</li> <li>- 원료 제조물 관련 경영책임자 의무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경영책임자 의무 구분하여 규정</li> <li>- 원료 제조물 관련 화학물질 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규정</li> </ul>
<p>도급용역, 위탁등안전보건의무</p>	<p>&lt;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gt;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b>도급,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 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 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b>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그 기관이 그 시설, 설비, 장소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사자 정의에서 특고나, 다단계 하청으로 규정되어 있음</li> <li>- 하청업체의 규모에 따른 적용제외나, 적용유예와 무관하게 원청 처벌은 적용</li> <li>- &lt;공동의무 부여에서 직접의무 부여로&gt; <u>조문 수정 : 적용제외나 적용유예 사업장도 원청 처벌은 가능하도록 조문 정비</u></li> <li>- 사외하청 중에서도 운영,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를 포괄하도록</li> <li>-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시민재해 원청책임과 처벌 도입</li> </ul>



구분	법안 내용	분석 및 비교
경영책임자 처벌	<p>사망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병과 할 수 있음</p> <p>부상과 질병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p> <p>형이 확정 된 후 5년 이내 위반 시는 각 항의 2분의 1 가중 처벌</p>	<p>산업재해, 시민재해 동일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과 부상 및 질병의 처벌 양형 차등</li> <li>- 하한형 도입. 산안법 대비 형사처벌과 벌금형 상향</li> <li>- 부상사고와 직업병 도입됨</li> <li>- 시민재해는 처벌 없음에서 도입</li> <li>- 중대산업재해 가중처벌 도입</li> </ul>
법인 처벌	<p>사망은 50억 이하 벌금 부상, 질병은 10억 이하 벌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 시민재해 동일 적용</li> <li>- 매출액 대비 벌금을 도입하지 않고, 원안 벌금 20억 이하보다 상향</li> <li>- 벌금 하한은 없음</li> </ul>
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li> <li>- 정당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시 5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책임자 안전교육은 산안법에 수년 동안 시도, 이번에 도입의 의미</li> <li>- 처벌과 무관하게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경영책임자 안전교육 의무 부과</li> </ul>
처벌사실공표	<p>[중대산업재해 발생 공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명칭, 발생일시와 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등 발생 사실 공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형 확정시 공표</li> <li>- 1년</li> </ul>
심리절차특례	<p>[심리 절차에 관한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범위만 여부에 관한 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피해자 또는 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음</li> <li>-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전문 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 참여하게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헌논란으로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삭제되고, 양형절차 특례 등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입</li> <li>- 재판에서 피해자, 안전보건전문가 참여 일부 보장</li> </ul>
징벌적손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li> <li>- 손해액의 5배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책임자가 처벌된 기업에게 부과</li> <li>- 피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li> </ul>

정 부 의 지 원 및 보 고	<p>- 산업재해. 시민재해 공통 해당</p> <p>① 정부의 대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li> <li>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li> <li>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li> <li>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li> </ol> <p>② 정부의 예산지원</p> <p>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p> <p>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p>
--------------------------------------	--

###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예방의무 규정이 기본내용, 사망과 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이 기본 내용, 경영책임자의 의무 규정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하여,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 하고,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벌금을 부과하며, 피해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만으로 처벌하지 않음.

중대재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책임자 의무위반 수사</li> <li>-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li> <li style="padding-left: 20px;">경영책임자 안전교육 수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책임자 형사처벌</li> <li>- 법인 양벌규정으로 벌금</li> <li>- 피해자 징벌적 손해배상</li> <li>-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li> </ul>
------------	--	---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왜 알아야 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수사와 처벌에 관한 법률이지만, 경영책임자 의무를 규정하여 사업장의 예방활동 요구와 투쟁의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되도록 강제해야 재발방지로 이어집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

- 산재사망이 발생하면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죄 위반,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사망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이 통괄 지휘를 합니다. 2022년 1월부터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중대 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합니다.

- 중대 산업재해는 노동부 9개 광역 중대재해 관리과에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 쟁점사안은 노동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개시 판단 결정. 과로사망, 직업성 질병, 자살 등이 수사심의위원회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대검찰청 <안전사고 전문위원회> 운영, 대법원은 법원 행정처에 전담 조직 설치, 울산지법은 전담 재판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VS 산업안전보건법 수사와 처벌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167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대상	사망	- 사망, 부상, 질병 - 질병의 종류는 시행령에 24개 목록 명시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고용 노동자 (전속성, 직종 무관) 하청 사업주
원청 처벌의 범위	- 동일 사업장 하청 노동자 - 사외 하청 22개 위험작업	- 동일사업장, 사외 하청의 원청 - 특수고용 노동자의 원청 - 발주, 임대도 실질적 도급이면 적용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38조 안전조치, 39조 보건조치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63조 원청 의무 위반	-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 (시행령에 9개 항 규정)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이행 위반 여부 - 안전보건관계 법령 이행, 안전교육 이행 점검 및 조치 의무 (시행령에 4개항 규정) - 하청, 특수고용도 원청 경영책임자에 동일한 의무 부여 위반 시 처벌
처벌 대상	- 말단 관리자 처벌 - 사업장 단위 처벌로 공장장, 현장소장 처벌이 최대임.	- 복수 사업장은 본사 경영책임자 - 원청, 하청 경영 책임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처벌 내용	- 사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법인은 10억 이하 벌금 - 형 확정 후 5년 이내 가중처벌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법인 50억 이하) - 부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법인 10억 이하) - 형 확정 후 5년 이내 가중처벌 -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액 5배 이내
적용 범위	- 모든 사업장 적용	- 업종구분 없음 - 5인 미만 적용제외. - 50인 미만, 50억 미만 공사 적용유예. - 원청이 5인 이상이면 하청 규모와 무관하게 원청 처벌은 적용. 하청은 산안법 적용 처벌 - 원청이 50인 미만, 하청은 50인 이상이면 원청 처벌은 적용유예, 하청은 적용

## ■ 중대산업재해 적용대상은 ?

- 중대산업재해는 업종별 구분 없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제조업, 건설업, 사무, 서비스업은 물론이고,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군대 등을 비롯하여 비영리 법인인 병원, 복지시설 등 전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적용됩니다.
  - 중대 산업재해는 사망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 현장이나 병원에서 사고사망은 물론이고, 과로사나 직업성 암 등에 의한 사망이나 자살도 적용대상입니다.
  - 중대산업재해를 민간기업의 사고사망으로만 한정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투쟁해야 합니다.
- ▷ 병원 사업장의 일터 괴롭힘에 의한 자살은?
  - ▷ 학교 급식 조리사 노동자의 폐암, 화상사고는?
  - ▷ 유통마트에서 발생한 승강기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는?
  - ▷ 사무직 노동자의 과로사는?
  - ▷ 공무원 노동자의 코로나 대응 관련 과로사, 자살은?
  - ▷ 철도,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산재사망은?
  - ▷ 지자체 청소노동자의 야간작업 사고사망은?
  - ▷ 돌봄, 요양 등 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자살은?

## ■ 특수고용 노동자의 중대 산업재해도 적용

- 특수고용 노동자의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원청에게 적용됩니다. 전속성을 따지지 않고, 직종과도 무관합니다.
- 보험설계사 노동자의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보험회사 본사의 경영책임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건설기계나 화물운송, 택배, 설치수리 기사 노동자의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청 본사의 경영책임자도 의무 위반여부를 수사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 특수고용 노동자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과 처벌을 하도급 업체나 위탁업체에게 떠 넘기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투쟁해야 합니다.

- ▷ 지게차, 굴삭기, 덤프, 화물운송 노동자의 사고사망 처벌은?
- ▷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망 원청 택배사의 처벌은?
- ▷ 마트 배송기사 노동자의 분류작업 중 사고 처벌은?
- ▷ 병원의 응급차량 운송기사 노동자의 사고 처벌은?
- ▷ 설치수리 기사 노동자의 추락사망 처벌은?

## ■ 동일사업장 다단계 하청 노동자, 사외하청 노동자의 중대 산업재해도 적용

- 건설업, 조선업 등 다단계로 내려가도 최종 원청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도 처벌합니다. 하도급 사업주의 중대 산업재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동일 사업장에서 식당, 경비, 조경, 시설관리, 청소 등의 하도급을 주고 하청 노동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 본사의 경영책임자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 사외하청인 경우에도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이 있다면 작업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적용대상이 됩니다. 제조업이나 플랜트 현장에서 별도의 장소나 제작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 본사의 경영책임자도 수사, 처벌해야 합니다.

### [참조] 시행령 Q/A (노동부 설명자료 발췌)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 사업주가 해당 장소, 시설·설비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 해당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 특히, 사업장뿐 아니라 사업장 밖이라도 사업주가 지정·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장소는 모두 포함됨.
- 수급인이 작업장소나 시설, 설비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급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다만, 계약 형식상 임대차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노무를 제공하고 임차인이 위험원을 직접 지배·관리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가 적용될 것임.

## ■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미만 건설공사도 원청 처벌은 즉각 적용

- 5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 기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므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통합하여 <사업>의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원청의 상시근로자 기준이고, 여기에는 기간제, 파견 노동자 숫자,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됩니다.
-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미만 건설공사는 공포 후 3년인 2024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원청 처벌은 2022년 부터 적용됩니다.
- 원청도 하청도 50인 이상이면 원청, 하청 경영책임자 모두 적용됩니다.
- 하청 업체가 5인 미만, 50인 미만이라도 원청 기업이 50인 이상 이면 2022년 부터 적용, 5인 이상은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이때 하청업체는 산안법 위반으로 수사와 처벌되는 것입니다.

## ■ 발주와 임대차도 실질적으로 도급인지 여부에 따라 원청 적용

- 건설공사 발주자는 일반적으로 적용대상 아니지만, 발주자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에는 도급인 즉 원청으로 보아 적용대상이 됩니다.
- 화학 사업장, 제철소 현장 대 정비보수 공사는 ‘필수업무인지,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

는지, 작업허가서 발급을 누가 했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요건에 해당되면 원칙으로 판단하고 적용대상이 됩니다.

- 장비 임대차, 유통 매장의 장소 임대차도 형식적 계약은 임대차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 도급이면 원칙으로 보고 적용대상이 됩니다.

## ■ 중대산업재해의 기준

### ○ 중대산업재해의 기준

- 중대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사망은 사고사망만이 아니라 과로사, 직업병에 의한 사망. 일터 괴롭힘 등에 의한 자살 등을 포함합니다.

○ 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사고’ ‘장소적 시간적 근접성을 기준으로 동일한 사고를 판단합니다.

### ○ 직업성 질병은 24개로 시행령에 명시

- 형광등 철거 작업의 수은중독
-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 식당의 숯불 연기나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 일반 제조업, 컴퓨터 수리센터의 세척작업, 도장작업의 TCE 노출
- 하수구 작업, 아스팔트 사용 작업의 황화수소 중독, 도금 작업의 시안화수소 중독, 구미에서 발생했던 불산 중독등 화학물질 노출 중독
- 병원 사업장의 B형 C형간염, 매독, 후천성 면역결핍증
- 지하 맨홀 등 밀폐작업에서 발생하는 산소결핍증
- 비파괴 검사작업 등의 급성 방사선증
- 고열 폭염 작업에서 심부 체온이 상승하는 열사병 등 24개를 시행령에 규정

○ 직업성 질병은 <동일 유해요인,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명 이상 발생의 기준은 사업장이 아니라 <기업>입니다. 폭염으로 3개 이상의 다른 현장에서



열사병이 발생하면 원칙 본사 기업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직업성 질병은 치료 기간 등 중  
중도 기준은 없습니다.

○ 중대 산업재해는 산재보험의 승인여부가 기준이 아닙니다. 공무원, 대학 및 대학병원,  
군인 등 보상체제는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사자 즉 특수고용노동자도 포괄하고  
있고, 산재보상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도 포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출퇴근 재해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회사 제공 통근버스 출퇴근 재해는 사고  
원인에 따라 적용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 수사심의위원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인지가 불분명할 경  
우에는 수사대상 여부를 노동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과로사, 직업성 질  
병, 자살 등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

법 2조 9항 경영책임자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  
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 공공부문

- 공공부문은 <--의 장>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은 각 부,처, 청, 위원회의 <장>, 지방자치단체는 시,군, 구의 <장>
- 국립학교 중 국립대학은 총장, 국립 초중고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
-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국립대학병원은 병원장이 경영책임  
자

### ○ 민간부문

- 통상적으로는 기업의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입니다.
- 대표이사가 2명인 경우 2명 모두 경영책임자일 수 있고, 실질적인 최종경영책임자 판단  
합니다.

- 법 시행령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도록 하고, 활동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등 전문인력 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장, 현장 소장 등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전문인력인 안전보건관리자는 경영책임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SO(최고안전책임자) 선임하고 등기이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경영책임자로 보지 않습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결정권이 있는지에 따라 경영책임자 판단하게 됩니다.
- 2020년부터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14조에서는 500인 이상 기업과 1,000위 건설업체는 대표이사가 산재예방과 관련한 계획과 집행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인 이상 기업과 1,000위 건설업체는 본사의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입니다.
- 오히려 형식적으로는 기업 내에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아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면 경영책임자로 보고 처벌하도록 해야 합니다.

[참조] 시행령 Q/A (노동부 설명자료 발췌)

1. 경영책임자 등이 의미하는 것은?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 대내적으로 사업 운영을 총괄·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 기업의 대표이사, 단체 등의 이사장, 기관장 등을 의미함
    - 직위의 형식적인 명칭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람이 경영책임자임
  - 특히,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회사 내에서의 ①직무②책임과 권한 ③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책임자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개별·구체적 사안에 따라 복수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 대표이사 등에 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조직·인력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에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안전 및 보건 의무 이행에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임
    - 안전보건담당 임원, 생산담당 대표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 기업이 여러 사업장(공장, 건설현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단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만을 책임지는 사람은 이 법의 경영책임자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단지 형식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 담당이사등을 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려움(노동부 처벌법 F/Q)
  
- 한편, "또는"은 선택적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님
  -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 실질적으로 이 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적용될 것임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부여됩니다.
  
- 하나의 기업에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경영책임자는 본사의 경영책임자를 의미하며 예방을 위한 계획은 사업 총괄적으로도, 사업장별로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법 4조

- 법 5조 도급, 용역, 위탁은 법 4조 1항부터 4항 모든 조치 적용

법 4조 1항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5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200위 건설기업은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둘 것 (3명 이상인 경우)
	3. 유해위험 요인 확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 위험성 평가 실시하여 보고받은 경우는 점검으로 본다
	4.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 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 - 노동부 장관 고시사항
	5.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줄 것 -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
	6. 법정 기준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겸직일 경우 업무수행시간 보장
	7. 종사자 의견 듣는 절차 마련.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 이행하는 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 할 것. 산보위 건설안전 협의체 등은 의견 들은 것으로 보고, 개선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8. 매뉴얼 마련하고 매뉴얼 따라 조치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작업중지, 대피, 위험요인 제거,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9. 도급, 용역, 위탁 시 기준과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 도급, 용역, 위탁업체의 재해 예방 능력 평가기준절차 - 도급, 용역, 위탁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기준 - 건설업의 공사 기간 조선업의 선박 건조 기간
2항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시정 명령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항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2-1. 법령 준수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점검. 민간위탁 포함.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 점검 끝난 후 지체없이 결과 보고 받을 것
	2-2. 법령 이행이 되지 않는 사실 확인되는 경우 인력배치, 예산 추가 편성.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 할 것
	2-3.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여부 점검. 직접 점검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결과 보고 받을 것
	2-4 미 실시 교육 지체 없이 이행지시,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 할 것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목표와 경영방침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목표와 경영방침에 대해 종사자가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종사자 의견수렴을 통해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2인1조, 과로사 예방 등을 위한 적정인력 보장

- 시행령 대응 투쟁으로 시행령 4조 4항에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는 집행이 의무로 부과되었습니다.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인력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명시된 <신호수, 크레인 충돌, 산업용 로봇 등 위험작업의 감시자, 장비 유도자, 화재 감시자, 폐기물 관리법의 3인1조 작업> 등은 일차적인 대상입니다.
- 노동부 해설서에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등으로 2인1조 작업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의 ‘2인1조 작업, 6개월 미만 노동자 단독작업 금지’에 따라 기관별로 선정된 인력뿐 아니라, 민간 개별 기업이나 사업장별 작업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는 2인1조 작업, 안전관리 인력 등을 근거로 실질인 인력과 예산 편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침이나 매뉴얼에 있으나 인력관련 예산을 편성, 집행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으로 보고 처벌해야 합니다
- 3항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이나 7항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인력에 대한 요구가 있음에도 인력증원이나 예산 편성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으로 귀결되었다면 처벌해야 합니다.

○ 위험성 평가 실시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시행령 4조 3항, 4항

-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이 이루어지는 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등 법에 규정된 정기점검, 원하청 합동점검 실질화는 물론이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유해위험 요인의 점검도 포괄합니다.
-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로 도출된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해야 하고, 개선 여부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36조 위험성 평가

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위험성 평가 노동자 참여 법제화.
-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이행 여부 확인> 전 과정에 노동자 참여 보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건설안전협의체 등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시행령 4조의 7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간 협의체, 건설업안전보건협의체를 실시하면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장별로 각각 설치되어 있다면, 본사 경영책임자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의무 위반입니다.
- 산보위 심의의결 했거나,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조치하지 않으면 경영책임자 의무위반입니다.

\* 종사자 의견 수렴절차 같음

산업안전보건법 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64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원하청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75조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원하청 노사동수)

- 사업장별로 산보위 설치 대상인 경우 본사 차원의 중앙 산보위 구성 등을 요구하고, 본사 경영책임자에게 개선요구를 직접 공식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산보위 등의 설치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 마련해야 합니다. 종사자 의견수렴 방식은 온라인, 건의함, 간담회 등 형식 규정 없음. 이에 형식적인 건의함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의견수렴 절차와 구조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원청의 노동조합은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의견을 반영하여 산보위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하청, 특수고용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거나, 개선 요구를 본사 경영책임자에게 공식문서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도급, 용역, 위탁

-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부여된 모든 조항이 적용됩니다.** 하도급 이나 위탁 등을 할 때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원청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위험점검도 해야 하고, 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도출된 의견에 따라 반영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 하청업체 선정 시에 낙찰금액만이 아니라, 하청업체의 재해예방 능력을 선정기준에 반영하고, 그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의무 부여되어 있습니다.
- 도급, 용역, 위탁 시에 하도급 업체 등에게 안전보건 관리 비용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대로 이루어지는 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종전에 건설업과 조선업에만 적용되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전 업종에 확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법정 산안관리비보다 더 높게 집행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그 외 는 비용의 적정성 기준은 없습니다.
- 건설업, 조선업의 경우에는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건조기간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대로 보장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일반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의무가 부여됩니다.  
(예시 : 3개월 정도의 부상사고가 발생했는데, 이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개선대책을 수립했는데 이행하지 않고 동일 유형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으로 처벌)

○ 정부, 지자체의 시정명령 조치 이행

- 정부나 지자체의 조사 점검 등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의무 위반으로 처벌합니다.

■ 경영책임자의 의무 (법 4조의 4/시행령 5조)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하는데 관련된 법령
2-1. 법령 준수 점검 법령 준수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점검. 민간위탁 포함. 직접점검하지 않는 경우 점검 끝난 후 지체없이 결과 보고 받을 것
2-2. 법령 미 이행에 대한 인력,예산 집행 조치 법령 이행이 되지 않는 사실 확인되는 경우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 집행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 할 것
2-3. 안전교육 실시 점검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여부 점검. 직접 점검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결과 보고 받을 것
2-4 안전교육 실시, 예산확보 미실시 교육 지체 없이 이행지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 할 것



## ○ 안전보건관계 법령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특수고용노동자를 포괄하고 있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을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노동부 해설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선박안전법, 학생연구자 안전법, 폐기물 관리법 등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정하라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으나,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을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아, 향후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 남발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 노동부는 과로사, 일터 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매년 520 여명이 사망하는 과로사, 매년 증가하는 일터 괴롭힘에 의한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근로기준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적용하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 ○ 점검과 안전교육의 민간위탁에 대한 노동조합의 감시 활동

- 법령 이행 점검은 노동조합의 참여 속에 실시 되도록 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하청 합동점검 규정을 활용하여 하청 노동자 참여를 요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작업도 점검해야 함.
- 시행령 대응 투쟁에서 제기했던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민간위탁 금지>는 거부되었습니다. 법령 점검과 교육실시 점검을 외부 위탁이 허용되었고, 다만 외부위탁을 주는 경우 결과를 지체 없이 경영책임자가 보고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밀착된 감시활동이 필요합니다.
- 법령 이행 점검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그 기관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점검만 위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이 사업장의 폐기물 관리법등의 법령 이행 점검을 위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수행시간 보장, 안전보건관리자 평가 및 관리감독자 권한 보장 - 시행령 4조 5항, 6항

-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소장, 공장장), 관리감독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보장해야 함. 안전보건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 현장소장 등의 안전관련 업무 수행에 대해 현장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평가가 비중 있게 반영되도록 노사가 합의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문제가 있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자체 평가를 공식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전보건전문인력이 겸직하는 경우 노동부 고시에 있는 최소한의 업무수행시간 보장. 법령에 정한 대상과 활동시간 기준을 넘어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시간 보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보장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겸직 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시간 기준 고시 (법에 겸직 허용된 경우)**

-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 이상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702시간 이상)
- 위 최소시간에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은 100시간, 2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0시간 추가

■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은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경영책임자가 총 20시간 이내의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 1년 동안 사업장 명단과 처벌 사실을 공표 하게 됩니다.

## 중대시민재해

### ■ 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에게 발생한 재해

- 사망 1명 이상, 동일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10명 이상, 동일원인 3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 ■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에 의한 시민재해 (예시)

- 변류기 폭발, 가슴기 살균제 사건, 불산가스 누출 사건, 병원 집단쇼크 사건
- 모든 원료, 제조물의 생산, 제조, 판매, 유통과정을 포괄합니다.
- 자동차, 먹는 샘물 등도 제작상 결함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공중교통수단, 공중이용시설

- 철도, 지하철, 항만, 공항, 버스 등의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놀이공원, 요양원, 대형점포 장례식장, 전시장, 실내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건축물, 교량, 터널, 댐, 하천, 상하수도, 옹벽, 주유소 등이 해당되며 법에 면적 등 세부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음식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학원, 목욕장, 게임방,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사격장, 스크린 골프장, 안마시술소 등이 대상이 되며 법에 면적기준 등 세부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철도, 도시철도, 시외버스, 항공기, 여객선 등 대중이 이용 여부를 중심으로 세부 기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위탁, 도급한 경우 중대산업재해와 같이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의무이행자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 경영책임자의 의무

-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 예산 등 체계 구축, 점검, 위험점검, 대응매뉴얼 등 각각 의무 부여되어 있습니다.
- 형사 처벌, 벌금, 법인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합니다. 가중 처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뿐 아니라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현장 노동안전보건활동 강화와 연계됩니다.

1. 사업장 점검,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계 법령 준수, 안전교육 등 법은 있으나 실시하지 않았던 각종 조치의 이행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부여
2. 인력과 예산 문제에 대한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확히 규정. 개별 지점이나 공장의 문제로 미루거나, 하청업체 책임으로 회피해 온 문제에 대한 이행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부여
3.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적용으로 실질적으로 처벌에 이르게 되는 핵심적 요인은 “예견가능성” 임. 현장의 노동조합, 노동자, 하청,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제기한 개선 요구에 대해 경영책임자가 알았는지, 개선을 했는지가 처벌의 관건적 지표임. 경영책임자가 노동자, 노동조합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 적극 수용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음.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재발방지대책의 전면적 개선이 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1. 중대재해 대응 활동이란?

- 사고조사는 작업중지 명령, 재해조사, 특별근로감독, 안전보건진단 명령 등의 대응 활동과 고용구조,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문화 등에 대한 내용까지 포괄
- 재발방지 대책 수립은 안전보건 대책에서 인력과 예산, 고용구조 개선, 법 제도 개선 등 다양하게 제시
- 책임자 처벌은 노동자, 말단 관리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실질적인 최고책임자 처벌로 가도록 하는 것

##### 2.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 중대재해 발생시에 대한 단체협약, 산보위 규정을 정비하고,
- 산별, 지역본부와 중대재해 공동 대응 투쟁을 전개하는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

## 1) 대응 기초

- 중대재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예방계획, 예산 등 대응계획 수립을 노사가 공동으로 논의하고 심의 결정
- 500인 이상 기업, 1,000위 건설기업, 공공기관 안전관리 중점기관등은 이사회 계획수립 보고등이 의무 적용되므로, 이와 연동하여 대응
-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에는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당사자의 요구와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재해예방 당사자로서 참여구조 정식화 요구.
- 중대시민재해 대상 사업장은 시민재해에 대한 예방계획도 반드시 수립하고,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심의 결정.
- 본사와 복수의 공장, 복수의 지점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본사, 중앙 차원의 계획 수립을 노사가 공동으로 심의 결정
- 재해예방을 위한 노동자 참여 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위한 활동시간 및 권리 보장 방안 마련

## 2) 세부 대응 방안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및 산재예방계획 수립 심의 요구

- 법 시행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재해예방 계획, 인력, 예산 등을 수립해야 합니다.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건설업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따라 개선방안을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2019년부터, 상법상의 500인 이상 기업과, 1,000위 건설업은 2021년부터 본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안전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령에서는 산재예방 계획이 노사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이사회 등에 보고될 산업재해예방

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을 요구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재해예방 계획에는 과로사 등을 유발하는 장시간 노동, 노동강도 등에 대한 인력 증원 및 설비 개선 계획 등이 포함되고, 재해예방 계획이 사고성 사망으로 한정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본사 산보위 개최 요구 혹은 공동 대응

- 산업안전보건법의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는 본사의 대표이사의 의무임. 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 철도, 교통공사등과 같이 산보위를 중층적으로 운영하는 단위는 중앙 산보위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본사와 지점으로 구분되어 있어, 각각 산보위를 운영해 왔던 사업장은 이를 계기로 중앙산보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 혹은 노동조합의 임시 교섭 요구등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2)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재해예방 대책 수립

- 2020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원 하청 동일 사업장은 전면적으로, 사외하청의 경우 일부 원청이 안전조치, 보건조치의 직접 의무를 지게 됨. 특수고용노동자 14개 직종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여됩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특수고용은 전속성 여부나 직종 제한 없이, 원청의 의무를 동일하게 부여받게 됨. 하청도 동일 사업장은 물론 사외하청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넓게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는 하청과 특수고용에 대한 경영책임자 의무를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음. 특히,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업종과 무관하게 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비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건설업과 조선업은 공사기간, 건조기간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점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계약조건, 안전관리 인력, 재해예방 조치 등 포괄적인 재해예방 대책이 수립되도록 해야 함. 하청 업체나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안전과 보건에 대한 책임, 사고발생 등에 대한 책임을 강요하는 계약관행에 대한 조사와 삭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 원청 사업장 노동조합은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요구를 조사하거나, 공동논의를 통해 요구안을 작성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 하청 노동조합, 특수고용 노동조합은 원청에 재해예방을 위한 요구를 정식화 하여 제출하고 교섭과 수용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노동자 참여 및 활동 보장 요구

- 기업이 부상과 질병에 대한 대응,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재해예방도 현실화 해야 하는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의 참여 및 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는 유해요인 점검을 하도록 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면 점검한 것으로 보고, 이후 개선방안 이행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노동조합의 참여에 따라 사업장 예방의 중요한 매개가 되거나, 형식적 운영으로 면죄부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참여 보장에 대한 각종 조항을 정식 요구하고 참여 보장을 촉구. 위험성 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측정, 현장 점검, 원 하청 합동 점검등... 적극적 참여, 노조의 요구안 공식화하고 정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내에 자체 마련되어 있는 각종 제안제도, 작업중지권 제도 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및 활동시간과 권리 보장을 위한 공세적 요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 지킴이 등) 가 필요합니다.
- 공공기관의 안전경영위원회, 원 하청 안전근로 협의체.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원 하청 노사협의체등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 위험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요구 공식화가 필요합니다.

### (4)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업지침, 매뉴얼 전면 검토

- 형식적으로 전시성으로 작성되어있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업지침, 매뉴얼에 대한 전면 검토와 이행 요구를 정식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지침에 2인1조 작업, 각종 위험작업에 2인1조 작업등의 규정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시설과 설비 중심으로 한정되지 않도록 전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 위험작업에 대한 노동자,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확보를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 (5) **꼼수 회피 전략 조사 및 대응**

- 경영책임자 처벌 대상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조직구조 분할, 하위직급에 책임과 권한 부여를 위한 규정 개정 등의 꼼수 회피 전략 추진이 진행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기업이 진행하는 조직개편, 규정 개정, 직급 규정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회피 전략 인지 확인하고, 폭로하며 저지하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 5인 미만 적용제외, 50인 미만 적용유예 등을 위해 쪼개기 계약이 추진되는지 파악하고 폭로 및 대응 투쟁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당사자에게 책임전가 및 회피전략을 위한 계약 및 구조 개편 추진 여부가 파악하고 대응 투쟁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 (6)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예방계획 수립에 노동조합 참여**

- 중대 시민재해 발생 시 기업과 기관의 처리 현황과 시스템의 문제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중대 시민재해 발생 시 기간의 말단관리자, 노동자 처벌에서 기업과 기관의 경영책임자 처벌을 하도록 하고, 원청에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입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자체 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동조합이 개입. 특히 피해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규정과 매뉴얼 마련되도록 개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시민재해 발생 시 노동자 처벌로 귀결되었던 관행에 대한 내부 처리 규정 전면 재검토 및 개정 요구 투쟁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투쟁 주요 내용

- 5인미만 적용제외, 50인 미만, 50억 미만 건설공사 적용유예 폐지
- 직업성 질병 급성 중독, 1년 3명 이상 발생 등 독소조항 삭제
- 법령 점검 민간위탁 금지
- 인과관계 추정 조항 복원
- 공무원 처벌 조항 복원
- 양형절차 특례 복원
- 벌금형 하한형 도입

<b>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b>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b>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
<b>제1장 총칙</b>	
<p><b>제1조(목적)</b>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li> <li>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li> <li>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li> <li>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li> </ol> </li> <li>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li> <li>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li> <li>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li> </ol> </li> <li>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li> </ol>	<p><b>제2조(직업성 질병자)</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p> <p><b>제3조(공중이용시설)</b>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li> <li>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li> <li>나.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인 건축물</li> </ol> </li> <li>3.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영업장</li> <li>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li> <li>나. 「도로법」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도로터널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li> </ol> </li> </ol>

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제1호의 터널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터널(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로 한정한다)

마. 다음의 시설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주유소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사업소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p>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p> <p>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p> <p>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p> <p>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p> <p>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p>	
---	--

## 제2장 중대산업재해

<p><b>제3조(적용범위)</b>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b>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b>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li> <li>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li> <li>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li> </ol>	<p><b>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b>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li> <li>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li> </ol>

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

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

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p><b>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①</b>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p> <p>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li> <li>2. 해당 사업장의 명칭</li> <li>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장소</li> <li>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li> <li>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li> <li>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li> </ol>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④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p>
<p><b>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b>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p>	
<p><b>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b></p>	



<p><b>처벌)</b>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p> <p>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p><b>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b>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p>	
<p><b>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b>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b>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b>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p> <p>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p> <p>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p>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기관등
2. 교육일정
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⑧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⑨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제8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

나.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

나.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나.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라.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4. 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 절차의 마련.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

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9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실시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되도록 할 것

4.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 다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

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와 공중교통수단의 점검·정비(점검·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6. 제5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다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한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등에 대한 긴급구조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

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 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라. 공중교통수단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의 제1종시설물에서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제11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

	<p>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p> <p>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p> <p>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p>
<p><b>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b>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p> <p>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b>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p>	



**제4장 보칙**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 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li> <li>2. 해당 사업장의 명칭</li> <li>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장소</li> <li>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li> <li>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li> <li>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li> </ol>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④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p>
<p><b>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b>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p> <p>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p>	
<p><b>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b>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p>	

<p>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li> <li>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li> <li>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li> <li>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li> <li>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li> <li>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li> <li>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li> </ol>	
<p><b>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b>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li> <li>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li> <li>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li> <li>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li> </ol> <p>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시행일 : 2021. 1. 26.] 제16조</p>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

1.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애 등의 급성중독
2. 납이나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蒼白), 복부 산통(産痛),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
3.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4. 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의 급성중독
5.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의 급성중독
6. 톨루엔(toluene)·크실렌(xylene)·스티렌(styrene)·시클로헥산(cyclohexane)·노말헥산(n-hexane)·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애,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메트헤모글로빈혈증(methemoglobinemia), 청색증(靑色症) 등의 급성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 소실(消失),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의 급성중독
9. 시안화수소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0. 불화수소·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청색증, 폐수종,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11. 인[백린(白燐), 황린(黃燐) 등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동소체(同素體)로 한정한다]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2. 카드뮴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3. 다음 각 목의 화학적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14.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 염소, 염화수소 또는 염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 다만,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염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로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
  18.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19. 동물이나 그 사체, 짐승의 털·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brucellosis)
  20.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거나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또는 공기색전증(기포가 동맥이나 정맥을 따라 순환하다가 혈관을 막는 것)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
  24.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